

KAIST [모집분야]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

1 모집분야 및 인원

| 직종 | 직명 | 모집분야 | 모집구분 | 인원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채저지 | 시가게이초해저지 | 일반행정 | 므고 | 1명 |
| % % 1 | 기신세계득행성수 | (반도체설계교육센터) | 干 ゼ | 1.9 |

[※]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.

2 모집분야 직무내용

| 모집분야 | 주요업무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61 - 11 - 11 - 11 | - 교육 운영 및 관련 비용 처리 | |
| 일반행성 | - 행사 지원 등 일반 사무 업무 | |

[※]자세한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(별첨) 참고

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|--|
| | - 임용일 기준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|
| 지원자격 | 자 |
| | - 경기도 동탄 근무 가능한 자 |
| | -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|
| | -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|
| | - 「병역법」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|
| | -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|
| | -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 |
| | 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|
| 결격사유 |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|
| | 취업제한 대상자 |
| | - 2019.9.1.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|
| | 않은 자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|
| | ㆍ「병역법」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|
| | ·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잇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|
| | (단, 체류자격이 영주(F-5)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) |

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|--|
| |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의 고령자를 임용하는 경우 ・연수연구원을 임용하는 경우 ・연수연구원 또는「병역법」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지를 위촉연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써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|
| 우대사항 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: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(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) |

4 근무조건 및 근무지

| 구분 | 주요내용 | | |
|-----------|--|--|--|
| 고용형태 | 기간제 | | |
| 근무형태 | □전일제 (주5일, 9시~18시) ∨시간제 (주5일, 30시간) | | |
| - 기 스타크 크 | 2024.12.01. ~ 2026.11.30.(2년) | | |
| 계약기간 | (참여과제 또는 사업 조기종료 시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.) | | |
| 급여 | 238만원/월 | | |
| 급역 | (총액연봉/세전기준, 학사기준, 경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) | | |
| 근무지 | 한국과학기술원-반도체설계교육센터(IDEC) 동탄 교육장(동탄 롯데백화점 내) | | |
| 근무부서 | 한국과학기술원 반도체설계교육센터(IDEC) | | |
| 임용예정일 | 2024.12.01.(임용일은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) | | |

지원방법 및 기간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|---|
| 지원방법 | 본 공고와 함께 게시된 지정양식을 작성 및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- 접수 이메일: ballhope@kaist.ac.kr ※ 메일 제목 : 위촉행정원 응시원서-성명기재 ※ 지정양식 외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 는접수하지 않음. |
| 접수기간 | - 2024.10.31.17:00 ~ 2024.11.14 17:00 도착분까지 |



6

채용일정 및 합격자 처리기준

가. 채용전형 일정

| 구분 | 평가방식 | 합격배수 (예비합격배 수) | 일정 | 비고 |
|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류전형 |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| 3배수 (2배수) | 2024년 11월 셋째주 예정 | 내부 기준에 따라 서류 전형 생략 가능 |
| 면접전형 | 지원자 개별면접 | 1배수 (2배수) | 2024년 11월 셋째주 예정 | 상세 일정.방법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 |
| 결격사유 검증 | 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-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| _ | 개별통보 | |
| 임용 | 신규임용 | - | 2024.12.01. (예정) | |

- ※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.
- ※ 지원 인원이 서류심사 합격 가능 인원 이하의 경우, 서류전형을 생략할 수 있음.

나. 합격자 처리기준

| 구분 | 처리기준 |
|-------------|---|
| 우대사항 | -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관련 법에 맞도록 적용* |
| 합격자 처리기준 | - 평가위원 평균점수(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)에 가점 및 자격점수를 포함하여 서류전형은 50점 이상, 면접전형은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배수에 맞게 선정 |
| 동점자 처리기준 | (서류전형) 합격선의 동점자 모두에게 배수와 무관하게 다음 전형 응시기회를 부여함. (면접전형) 관련 규정에 따라 ①취업지원대상자, ②장애인, ③지역인재, ④이전 전형고득점자, ⑤면접전형의 평가위원 평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. |

^{* 「}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②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
7 결격사유 검증

- (제출대상자) 면접전형 합격자(채용후보자)
- O (제출방법)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
- O (확인내용)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
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

| 제출서류 | 비고 |
|---|---|
| - 지원자격, 교육사항, 자격사항, 경험·경력사항, 연구 관련 증빙서류 일체 | 발급기관 서식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,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등 제출 |
| -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 | - 채용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별도 제출 요청 |
| -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(장애인증명서,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) | - 제출처를 KAIST로 발급받아 제출 |
| - 기타 진위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| |

○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

| 제출서류 | 비고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- 개인신용정보조회서 -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- 병적증명서(해당자) - 성범죄경력조회서 | - 발급기관 서식 (단, KAIST 양식이 있는 경우 제외) |

- 증빙자료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 서만 활용
- 모든 증빙서류는 기관 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자료만 인정하며, 컴퓨터 캡쳐화면 등 비공식적인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.
- O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.
-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


8

이의신청 및 서류반환신청

○ 이의신청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|--|
| 운영목적 | -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|
| 신청기간 | -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|
| 신청방법 |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(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) |
| 처리대상 | -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(※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.) |

○ 채용서류 반환신청

| 구분 | 주요내용 | | |
|--------|---|--|--|
| 청구기간 | -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| | |
| 신청방법 | - 채용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| | |
| 2001 | - 응시자는 반환청구서 신청양식을 기재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. | | |
| 반환대상 | - 채용서류(기초심사자료, 입증자료, 심층심사자료 등) | | |
| 반환제외대상 | -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| | |
| | - 지원자가 KAIST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| | |

9

유의사항

□ KAIST 별정직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유의사항

- O KAIST 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재임용 제한 규정 관련, KAIST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 상 경력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,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취소를 할 수 있음.
- KAIST에 기간제근로자로 재직 중인 경우,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이 불가함. (단, 결격사유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도 채용 가능)



□ 지원서 작성에 관한 사항
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, 누락, 지원자격 미충족 및 연락불능,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.
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,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. ※ 기관 명칭 오기,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, 비속어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등
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기재 내용이 증빙서류와 상이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,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불합격 처리, 합격취소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.
 - 응시원서 작성 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한 후 정확히 기재

[제출서류 목록]

| 지원자격 | 학력증명서,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류 |
|------|--|
| 교육사항 | 성적증명서, 수료증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 |
| 경력사항 | 다음의 2가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경력증명서(또는 재직증명서) - 4대보험 ¹⁾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 (※프리랜서, 해외경력 등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, 별도로 제출서류를 정함) |
| 기타활동 |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|
| 자격사항 | 자격증 증명서 |
| 우대사항 |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제출처:KAIST 또는 한국과학기술원), 장애인증명서 |
| 기타 | 기타 관련 서류 |

- 1)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보험확인서),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 중 1개의 확인서 제출
- ※ 증빙서류는 기관에서 발급한 공적인 서류를 기본으로 하며(컴퓨터 화면 캡쳐 자료 등은 불인정), 진위확 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- (미제출 시)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※ 여러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
 - (기재오류)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, 내부절차를 거쳐 오류의 경중을 판단하여 불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.



□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

- 모든 학교명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기재 (예: ○○대학교) ※ 다만, 경력 관련 학교인 경우 '경력사항'에만 기재 가능
-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, **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편견 유발 항목을 직・간접적으로 기재 시 감점** 처리함.
 - (편견유발항목) 이름(자기소개서), 출신지역, 출신학교(학력), 기족관계, 성별 연령, 신체조건, 재산 등

| 항목 | 예시 |
|----------|--|
| 출신 학교 | (예시1) 박사 졸업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는 서울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~ → 출신학교명을 직접적으로 기재하였음. (예시2) 가오리라는 수영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~ → 가오리가 KAIST 동아리라는 것을 아는 평가위원은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감점 처리 |
| 출신 지역 | (예시)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에서만 자라왔으며~ → 출신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기재함. |
| 가족 관계 | (예시1) KAIST 교수이신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며~ (예시2) 부모님 모두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~ → 가족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재함. |
| 성별 | (예시1) 군복무를 현역(운전병, 군수병, 전경, 의경 등)으로 의무복무를 하였으며~ → 병사로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는 남자이므로 성별 유추 가능 (예시2)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~ →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것은 남자이므로 성별 유추 가능 (예시3)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으며~ → 성별을 직접적으로 기재함. |
| 연령 | (예시1)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~ (예시2) 저는 소띠라서 소처럼 우직한 성격으로 ~ → 연령을 직접적·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기재함. |

○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(이름, 전화번호, 이메일 등) 및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(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된 정보 포함)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.

□ 부정행위 관련 사항

○ 채용 관련 부정행위 처벌사항

한국과학기술원 전형요령 제24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관련

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,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.

- 1.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- 2.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자
- 3.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등 응시자격 부적격자
- 4.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
- 5. 청탁・압력・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
- 6. 부정합격자*
- *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

○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합격취소·채용취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-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② <u>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</u>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- 1. 공공기관*
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- * 공직유관단체 포함

□ 기타사항

- 전형일정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함.
- 채용확정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제출해야함.
 - ※ 단,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,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포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사 포기서류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.
- 채용확정자(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)의 채용취소, 임용불응,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예비후보자(면접전형 예비합격 차순위 자)를 선정할 수 있으며, 기관 필요 시 최대 1년 이내에 채용을 할 수 있음.



- O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* 재직여부를 확인하며,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.
 - *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・외가 4촌 이내
- O 채용담당자: KAIST 반도체설계교육센터 인사 담당자 (ballhope@kaist.ac.kr, 042-350-4428)
- O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: KAIST 채용노무팀(recruit@kaist.ac.kr)



붙임1

한국과학기술원 결격사유

인사규정 제12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.

- 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 - 1. 피성년후견인
 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 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2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- 3. 삭제
- 4. 「병역법」 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
- 5.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
- 6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전형요령 제4조(응시자격) ①직원모집에 응모코자 하는 자는 인사규정 별표 제2호(제6조 제1항 관련) 에 정한 채용자격 기준요건을 구비하고 인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에 한한다.

③과학기술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병역의무에 대하여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별정직 취업요령 제10조(계약기간의 제한) ③ 별정직은 퇴직 후 1년간 재임용을 제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- 1. 「병역법」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임용하는 경우
- 2.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(단, 체류자격이 영주(F-5)인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)
- 3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를 임용하는 경우
- 4. 연수연구원을 임용하는 경우
- 5. 연수연구원 또는 「병역법」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자를 위촉연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써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